직업활동의 성격에 따른 장애연금 차별지급의 위헌성[1)]

1. 사건개요

2016년 1월 14일 파기원은 사회보장법 제L.341-10조가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와 권리에 합치하는지에 대해 Francine E.가 제기한 사후적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였다. 동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2016년 4월 14일 심판대상조문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

2. 쟁점(법률문제)

청구인은 2000년 11월부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애연금(pension d'invalidit?)[2)]을 수령하고 있었고 2008년 부동산 임대를 함으로써 비임금 근로활동을 재개했다. 청구인의 임대업 활동수입과 장애연금 수령액의 합계는 심판대상조문의 데크레에서 정한 상한을 초과하였고 2012년 5월 21일, 건강보험공단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3월 31일까지 수령한 장애연금 반환을 통지하였다. 동 사안은 소득(직업)활동의 성격에 따라서 장애연금 지급을 달리하는 심판대상조문이 평등원칙 및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위반되는지가 쟁점이다.

3. 설시내용

(1) 사회보장법에 관한 1985년 12월 17일 법규명령으로 개정된 사회보장법

---

1) Décision n°2016-534 QPC du 14 avril 2016.
http://www.conseil-constitutionnel.fr/conseil-constitutionnel/francais/les-decisions/acces-par-date/decisions-depuis-1959/2016/2016-534-qpc/decision-n-2016-534-qpc-du-14-avril-2016.147228.html

2) 60세 미만으로 모든 일에 소득능력을 2/3 이상 상실한 자로서 장애발생 이전에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이고, 최종 3개월간 200시간을 포함하여 최종 12개월 동안 800시간 이상 근로한 자가 받을 수 있다.

제L.341-10조는 다음과 같다 :

장애연금을 수령하는 자가 장애연금 수령기간 동안 비임금 근로활동을 하는 경우, 이러한 활동수입이 당사자 또는 해당 가정에 소득을 발생시켜 이러한 활동수입과 연금수령액을 합한 총액이 데크레에서 정한 상한[3]을 초과하는 때에는 지불기간 만료시 장애연금 지급이 종료(수급권 박탈)된다.

(2) 청구인은 비임금 근로 활동이 데크레에서 정한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사회보장제도에서 제공하는 장애연금 지급의 종료를 규정하는 심판대상조문이 같은 제도에서 비임금근로자(activit? professionnelle non-salari?e)와 임금근로자(activit? professionnelle salari?e) 사이에 장애연금 수급에 있어서 취급의 차이(diff?rence de traitement)를 발생시키고 이러한 취급의 차이는 어떠한 상황의 차이와 공익을 이유로도 정당화되지 않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 심지어 데크레에서 규정한 비임금 근로활동을 재개하여 발생한 소득의 상한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연금 지급종료를 규정하는 심판대상조문은 1946년 헌법전문 제11항[4]에도 위반된다고 하였다.

(3) 법률은 “보호하든가 처벌하든가 간에 만인에 대해서 평등해야 한다.”고 규정한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제6조를 고려해 보건대, 평등의 원칙이라 함은 제정된 법률 목적과의 직접적인 관계에 기초해 사안별로 차별 적용된 점이 입증되기만 한다면, 입법자가 각기 다른 상황에 대해 상이한 적용방식을 취하는 것도, 공익을 이유로 평등에 저촉하는 것도 금하지 않는다.

(4) 심판대상조문에 따르면 사회보장제도로서 제공되는 장애연금 지급은

3) 비임금 근로활동을 재개하는 연금수령자에 대해서 데크레에서 정하고 있는 상한(활동수입+ 연금수령액)은 523유로이다.

4) 국가는 모든 사람들 특히, 아이, 어머니, 고령노동자에게 건강보호, 물질적 안전, 휴식과 여가를 보장한다. 나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 경제적 상황을 이유로 일을 할 수 없는 모든 인간은 집단으로부터 생존에 충분한 수단을 얻을 권리를 가진다.

데크레에서 정한 상한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는 비임금 근로활동을 하는 경우 전적으로 종료된다. 반면 사회보장법 제L.341-12조는 최고행정법원의 데크레로 정한 조건 내에서 당사자(수급권자)가 소득활동을 재개하는 경우 이러한 임금소득으로 인해 데크레에서 정한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수급권자의 장애연금의 전부 혹은 일부 지급정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재개하는 소득활동의 성격에 따라 일반사회보장제도로서 제공받는 장애연금 수급권자들 사이에 취급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 사안에서 두 경우의 수급권자들 모두 동일한 일반사회보장제도에 가입되어 있고 같은 장애연금 수급권자들이므로 같은 상황에 있다.

(5) 심판대상조문을 적용하면서 입법자는 사회보장제도의 재정균형을 도모하려는 목적 하에 장애연금 수령과 근로소득을 동시에 취하는 것을 제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은 재개하는 직업활동의 성격에 따라 장애연금 수급권자들 사이에 취급의 차이를 두는 것을 정당화하는 공익의 이유가 되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다른 청구이유는 차치하더라도 심판대상조문은 평등원칙에 위반되므로 위헌으로 선언한다.

(6) 헌법 제62조 제2항은 “제61-1조에 기하여 위헌이라고 선언된 조항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공표되는 날부터 혹은 헌법재판소 판결이 정하는 이후의 날부터 폐지된다. 헌법재판소는 그 조항이 발생시킬 효과들이 재검토될 수 있는 조건과 제한들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재판소는 비록 위헌선언은 사후적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한 당사자의 권리구제에 기여해야 하고, 위헌으로 선언된 규정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공표시에 진행 중인 재판에 적용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헌법 제62조 제2항 후문의 규정은 헌법재판소에 문제되는 법률의 폐지일을 정할 권한과 그 효과를 연기할 권한 및 동 결정이 내려지기 이전에 위헌으로 선언된 규정이 발생시킨 영향에 대한 재검토를 고려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7) 심판대상조문의 위헌결정은 동 결정의 공표일로부터 적용되고 동 날짜에 종국적으로 판결되지 않은 모든 소송에서 원용될 수 있다.[5)]

5) 심판대상조문은 2011년 사회보장재정을 위한 2010년 12월 20일 법 제2010-1594호 제77조로서 **2011년 6월 11일부터 폐지**되었다.